

의안번호	제 693 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발의자	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1년 4월 13일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박형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93
----------	-----

발의연월일 : 2021년 4월 13일

발의자 : 박형용, 이숙애, 이상욱,
이의영, 장선배, 허창원
윤남진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 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이고 가치중립적 개념인 “노동” 으로 일괄 정비하여 노동에 대한 인식개선과 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코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조례상의 “근로” 라는 용어를 “노동” 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문 개정(안 제2조 외)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1 - 31호
- 나. 협의 : 기획관리실 법무혁신담당관
-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라. 관계법령 : 해당없음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조례에 대한 용어 일괄정비를 통해 노동에 대한 인식개선과 노동 존중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조 중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한다.

제3조(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중 “근로청소년”을 “노동청소년”으로 한다.

제4조(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5조(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근로활동”을 “노동활동”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소득”으로 한다.

제6조(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제7조(충청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8조(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를 “사회복지·교육·주거·노동”으로 한다.

제9조(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진폐근로자”를 “진폐노동자”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조 중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를 “노동자(이하 “진폐노동자”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진폐근로자”를 “진폐노동자”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진폐근로자”를 각각 “진폐노동자”로 한다.

제6조 중 “진폐근로자”를 “진폐노동자”로 한다.

제10조(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제 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11조(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원(「충청북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2조(충청북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 본문 중 “근로관계”를 “노동관계”로 한다.

제13조(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라목 중 “도시근로자”를 “도시노동자”로 한다.

제14조(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을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으로 한다.

제11조제7항 중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을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으로 한다.

제15조(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제16조(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지원인”을 “노동지원인”으로, “사람을 말한다”를 “사람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 중 “근로지원인”을 “노동지원인”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근로지원인”을 “노동지원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지원인”을 각각 “노동지원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근로지원인”을 “노동지원인”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지원인”을 “노동지원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근로지원인”을 “노동지원인”으로, “근로공학기기”를 “보조공학기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근로지원인”을 각각 “노동지원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근로지원인”을 “노동지원인”으로 한다.

제17조(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를”을 “노동을”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일용근로자”를 “일용노동자”로,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위생관리용역근로자”를 “위생관리용역노동자”로, “근로를”을 “노동을”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건설기계근로자”를 “건설기계노동자”로, “근로자를”을 “노동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를 “노동의 대가로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를 “일용노동자, 위생관리용역노동자, 건설기계노동자”로, “그 밖의 근로자”를 “그 밖의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노동계약(「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근로자 상담)”을 “(노동자 상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8조(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를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노동자종합복지관”으로, “근로자의”를 “노동자의”로 한다.

제2조 중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노동자종합복지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근로자단체가 주관하거나 근로자”를 “노동자단체가 주관하거나 노동자”로 한다.

제19조(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근로를”을 “노동을”로, “근로자파견 계약서”를 “파견계약서”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근로소득자”를 “노동소득자”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다목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근로자 정착을 위하여 근로자”를 “노동자 정착을 위하여 노동자”로 한다.

제20조(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을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으로 한다.

제2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근로자단체”를 “노동자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기관·근로자단체·사용자단체”를 “행정기관·노동자단체·사용자단체”로 한다.

제15조제4호 중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노동자”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9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노동자”로 한다.

제21조(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2조(충청북도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를 “충청북도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비정규직근로자의”를 “비정규직노동자의”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정규직노동자”란 기간제노동자·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의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말한다) 및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제3조 중 “비정규직근로자에”를 “비정규직노동자에”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비정규직근로자의”를 “비정규직노동자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 조건”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비정규직근로자”를 각각 “비정규직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비정규직근로자”를 “노동복지기금(「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말한다) 수혜대상에서 비정규직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를 “공무직원(「충청북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간제노동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비정규직근로자”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용역근로자”를 “용역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비정규직근로자”를 “비정규직노동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를 “공무직원으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비정규직근로자”를 “비정규직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정규직근로자”를 “비정규직노동자”로,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비정규직근로자”를 각각 “비정규직노동자”로 한다.

제11조 중 “비정규직근로자”를 “비정규직노동자”로 한다.

제12조 중 “비정규직근로자”를 “비정규직노동자”로,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원”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비정규직근로자”를 “비정규직노동자”로 한다.

제23조(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4조(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근로능력과 근로의지”를 “노동능력과 노동의지”로 한다.

제25조(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6조(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7조(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근로자단체”를 “노동자단체”로 한다.

제28조(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종합복지관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노동자종합복지관으로 본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 사 유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조례에 사용된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의안에 따른 비용발생에 해당하지 않기에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